

## 투자설명서 변경 대비표

1. 집합투자기구 명칭 : 다올 KTB 퇴직연금 40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  
(변경 후: 다올퇴직연금 40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)
2. 시행예정일: 2023 년 12 월 19 일
3. 변경사항:
  - 펀드명칭 변경
  - 최근 결산기 기준 재무제표, 수익률 변동성 및 운용실적 등 갱신
  -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  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  - 기업공시서식 개정 반영(증권대여 및 차입 관련 투자위험 추가, 증권거래비용 및 매매회전율 항목 추가)
4. 상세 변경사항:

항 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펀드명칭	펀드명칭 변경	다올 KTB 퇴직연금 40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	다올퇴직연금 40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
용어변경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	대차대조표	재무상태표

### 요약정보

투자비용	최근 결산기 기준 갱신	-	최근 결산기 기준 1,000 만원 투자시 총비용 예시 업데이트
	동종유형 총 보수 업데이트	-	동종유형 총보수 업데이트
투자실적추이(연평균 수익률)	최근 결산기 기준 갱신	-	최근 결산기 기준 갱신

### 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
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연혁 업데이트	-	2023.12.19 펀드명칭 변경(다올 KTB 퇴직연금 40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→ 다올퇴직연금 40 증권자투자신탁[채권혼합])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	가. 투자대상 <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대상> (1) 다올 KTB 퇴직연금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<채권>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[취득	가. 투자대상 <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대상> (1) 다올퇴직연금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<채권>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

	<p>시 신용평가등급이 A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권 및 주식 관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또는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</u>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]</p> <p>&lt;자산유동화증권&gt;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또는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</u>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 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</p> <p>(2) 다음 KTB 퇴직연금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&lt;채권&gt;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[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또는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</u>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 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]</p> <p>&lt;자산유동화증권&gt;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</u> 또는 <u>한국 주택금융공사법</u>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 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</p> <p>나. 투자제한 &lt;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제한&gt;</p>	<p>[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권 및 주식 관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</u>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]</p> <p>&lt;자산유동화증권&gt;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</u>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 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</p> <p>(2) 다음퇴직연금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&lt;채권&gt;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[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<u>한국 주택금융공사법</u>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 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]</p> <p>&lt;자산유동화증권&gt;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<u>한국 주택금융공사법</u>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 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</p> <p>나. 투자제한 &lt;모투자신탁 주요 투자제한&gt;</p>
--	--	---

	<p>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</p>	<p>(1) 다올 KTB 퇴직연금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동일종목투자: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 : (생략)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 10 조의 2 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,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 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),</u></p> <p>(2) 다올 KTB 퇴직연금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동일종목투자: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 : (생략)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 10 조의 2 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,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 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 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),</u></p> <p>&lt;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대상&gt; -</p>	<p>(1) 다올퇴직연금증권모투자신탁[채권] 동일종목투자: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 : (현행과 같음)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 10 조의 2 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),</p> <p>(2) 다올퇴직연금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동일종목투자: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 : (생략)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 10 조의 2 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 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),</p> <p>&lt;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대상&gt; 가. 투자대상 증권대여 관련 주식 추가:</p>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

			<p>주 2.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운용방법</p> <p>가. 수익률 증진: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,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수수료 수익을 추구</p> <p>나. 기타 효율적,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</p>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<p>증권대차거래 위험 추가</p> <p>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</p> <p>수익률 변동성 업데이트</p>	<p>-</p> <p>해지위험: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</p> <p>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(연환산)이 8.13%이므로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보통인 4등급으로 분류됩니다.</p>	<p>다. 기타 투자위험</p> <p>증권대차거래 위험: 증권대차거래가 일어나는 투자신탁의 경우, 한국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,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</p> <p>해지위험: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한 후 1 년 (<u>법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</u>)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 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하고 1 년(<u>법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</u>)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 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</p> <p>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(연환산)이 6.06%이므로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보통인 4등급으로 분류됩니다.</p>

		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추후 매 결산시마다 수익률 변동성을 재산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	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추후 매 결산시마다 수익률 변동성을 재산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최근 결산기 기준 갱신	-	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최근 결산기 기준 기타비용 및 증권 거래비용 갱신
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<p>나. 과세</p> <p>(4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</p> <p>①세액공제</p> <p>-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u>400 만원</u> 이내의 금액)과 연 <u>700 만원</u>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, <u>2022년 12월 31일</u>까지 「소득세법」 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u>600 만원</u> 이내의 금액)과 연 <u>900 만원</u>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,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u>300 만원</u> 이내의 금액)과 연 <u>700 만원</u>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.</p> <p>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</p>	<p>나. 과세</p> <p>(4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</p> <p>①세액공제</p> <p>-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u>600 만원</u> 이내의 금액)과 연 <u>900 만원</u> 중 적은 금액으로 함.</p> <p>&lt;삭제&gt;</p> <p>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</p>

		<p>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에 대해 세액공제</p> <p>②&lt;생략&gt;</p> <p>③연금 인출 방식에 따른 과세: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연금외 수령의 경우 과세체계가 다름. 자세한 내용은 <u>퇴직연금종합안내</u>(<a href="http://pension.fss.or.kr">http://pension.fss.or.kr</a>)의 '과세제도안내' 참조</p>	<p>액이 4 천 500 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에 대해 세액공제</p> <p>②&lt;현행과 같음&gt;</p> <p>③연금 인출 방식에 따른 과세: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연금외 수령의 경우 과세체계가 다름. 자세한 내용은 <u>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</u>의 '연금세제안내' 참조</p>
--	--	--	---
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1. 재무정보	최근 결산기	-	최근 결산기 기준 갱신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	기준 갱신		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	-	가. 요약재무정보 증권거래비용 및 매매회전율 항목 추가

제 4 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3.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	가. 신탁업자 신탁업자의 확인사항: -	가. 신탁업자 신탁업자의 확인사항: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제 5 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

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)	<p>(2) 임의해지</p> <p>3)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4)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</p>	<p>(2) 임의해지</p> <p>3)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한 후 1 년(법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)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4)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)을 설정하고 1 년(법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)이 지</p>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	--	--

			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	<p>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</p> <p>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)</p>	<p>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</p> <p>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</p> <p>8.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합니다. 이하 이 호 및 9 호에서 같다)으로서 설정 이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9.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p>	<p>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</p> <p>2.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(<u>법 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</u>)</p> <p>8.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(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합니다. 이하 이 호 및 9 호에서 같다)으로서 설정 이후 1 년(<u>법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</u>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p> <p>9.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 년(<u>법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</u>)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 192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</p>